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창원)2014나202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A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진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2가합32249 판결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와 C 사이에 2012. 4. 2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 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의 대출금채무 및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C(한국 아이디엠 대표)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과 경남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구분	제1신용보증	제2신용보증	제3신용보증	제4신용보증
신용보증약정일	2006. 11. 10.	2008. 12. 8.	2009. 3. 9.	2012. 6. 22.
신용보증금액	4,250만 원	9,095만 원	3억 7,500만 원	3억 345만 원
신용보증기한	2007. 11. 9. (기한 연장 2012. 11. 2.)	2009. 12. 7. (기한 연장 2012. 12. 7.)	2014. 3. 7.	2013. 6. 21.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액	5,000만 원	1억 700만 원	5억 원	3억 5,700만 원
특 약	기술신용보증기 금의 2002. 11. 15.자 보증채무	구 보 증 서 TQA-2003-0212 8을 회수하기 위		구 보 증 서 TQI-2008-00259 를 회수하기 위

	면책적 인수.	한 보증.		한 보증.
--	---------	-------	--	-------

2) 원고의 대위변제

2012. 9. 26. 제1, 3, 4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갑 제5호증), 원고는 2012. 11. 20. 경남은행에 제2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금으로 79,124,111원을, 2012. 11. 29. 중소기업은행에 제1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금으로 43,812,570원을, 제3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금으로 175,214,483원을, 제4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금으로 311,879,009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610,030,1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갑 제7호증의 1, 2).

나. C의 재산처분

C는 피고와 사이에, 2012. 4. 2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4).

다. C의 채무초과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① 적극재산으로 시가 2,233,317,24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시가 7,680,000원 상당의 경남 함안군 영동리 *** 답 40㎡, 시가 6,150,000원 상당의 같은 리 *** 외 2필지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등 건물, 시가 318,695,000원 상당의 수변전설비 등 기계기구 합계 2,565,842,240원 상당을 보유한 반면(갑 제8, 10호증), ②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액 합계 3,433,007,725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갑 제9호증의 2, 5, 7 내지 11,

14, 16 내지 21, 23, 25, 27, 28, 29).

순번	채무 내용	채무액(원)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722,048,921
2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3,400,968
3	주식회사 가야산업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8,400,000
4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3,729,550
5	주식회사 제이제이테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177,567,303
6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2,219,446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채무	29,918,470
8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8,750,000
9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950,274
10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 대한 대출금 채무	4,000,000
11	삼현철강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76,646,055
12	주식회사 신성에이치씨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	11,558,400
13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6,050,000
14	주식회사 세림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694,000
15	피고 엠에스테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52,518,103
16	에이치에스피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9,979,925
17	박성기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419,000
18	한국금륜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무	65,720,000
19	F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4,305,000
20	마산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무	99,132,310
합계		3,433,007,725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원시 의창구청장, 함안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경남은행에 합계 610,030,173원을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의 각 대출금채권은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2. 4. 27. 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제1, 2, 3신용보증에 따른 각 대출금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선의의 수익자 여부

1) 피고는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09. 9. 15. C로부터 납품받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엔진을 탑재하던 중 크레인의 고장으로 선박엔진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2009. 9. 15.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C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류기인
	판사	유석철

부동산 목록

1. 경남 함안군 칠북면 **리 *** 공장용지 700㎡
2. 경남 함안군 칠북면 **리 *** 공장용지 1,892㎡
3. 경남 함안군 칠북면 **리 *** 공장용지 752㎡
4. 경남 함안군 칠북면 **리 ***
 일반철골구조 마스타강판지붕 단층 일반공장 672.6㎡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화장실 16.5㎡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슬라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86.4m²

2층 83.08m²

5. 경남 함안군 칠북면 **리 *** 공장용지 1,595m²

6. 경남 함안군 칠북면 **리 *** 공장용지 1,134m²

7. 경남 함안군 칠북면 **리 ***

일반철골구조 마스터강판지붕 단층공장 862.6m²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화장실) 12m²

8. 경남 함안군 칠북면 **리 *** 답 1,441m² 중 2분의 1 지분. 끝.